

2. 새로운 제11-가장(혁신)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1-가장 혁신

제11가.1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혁신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정책에 대한 도전과제 또는 기회에 대처함으로써 그리고 혁신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것을 통하여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11가.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바이오경제란 제품과 서비스의 창출을 위하여 생물자원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혁신이란 새로운 또는 개선된 상품이나 서비스, 공정 또는 조직 방식, 또는 이들의 조합을 개발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1가.3조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투자 장려 및 국제 무역 증진 등을 통하여, 혁신이 양국의 경제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분야 등에서, 기술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양 당사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혁신이 양 당사국의 무역관계 내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의 기회가 극대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조율된 조치를 요구할 것임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양국의 정부, 산업, 기업, 대학, 공공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비정부 기구 간 혁신에 대한 기존의 협력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협력과의 중복이나 이 협정의 다른 장에서 진행 중인 작업과의 중첩을 회피하면서,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및 혁신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방식의 개발 등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5. 양 당사국은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공정 및 조직 방식에서 발생하는 무역 정책에 대한 도전과제 또는 기회를 양국이 예측하고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기존의 협력으로부터 도출된 혜택을 인정한다.

제11가.4조 혁신위원회의 기능

1. 제15.2조(전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혁신위원회는 제11가.1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혁신과 무역의 상호작용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바이오경제, 첨단제조, 생명과학, 연결형 자율주행차, 농업기술 및 청정에너지와 같은 양 당사국 경제의 혁신 집약적 분야에서의 중대한 발전
 - 나. 혁신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화와 관련된 문제
 - 다. 분산원장기술, 양자 기술, 몰입형 기술, 센싱 기술,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공학생물학, 또는 로봇 공학 및 자율 시스템과 같은 신생 기술

- 라. 공급망 복원력과 상품 및 서비스의 통합 증대를 포괄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사안
- 마. 혁신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과 관련된 규제 접근방식, 미래 기술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자 간 협력, 그리고 위험기반 접근방식, 산업계 주도 표준, 위험관리 우수 관행과 같은 사안을 고려한 국경 간 기술의 실험적 시험, 그리고
- 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¹ 또는 고등 교육 기관이나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연구 협력 개발을 통하여 창출된 무형자산의 국경 간 무역

2. 혁신위원회는

- 가.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산업 및 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책에서의 우수관행 원칙을 공유하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 나. 기존 협력의 중복을 회피하면서 양자간 협력 강화의 기회를 위하여 양 당사국 간 기존의 관계를 검토하고, 혁신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을 검토한다.
- 다. 혁신이 혁신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 및 투자를 더욱 증진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라. 제15.1조(무역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가 자신에게 회부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 마. 무역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모든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¹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는 무형(예: 연구) 및 비물질적 지식재산, 특히, 저작권, 프랜차이즈 및 자산의 국가 간 이전을 지칭한다. 이는 첨단 기술 스타트업, 대학 및 공공 연구소, 벤처 투자자, 전문 기술 중개인, 표준화 기구 그리고 정부 기관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세계적인이다.

바. 혁신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3. 혁신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가. 양 당사국간 협력 활동을 개발 또는 촉진한다.

나. 혁신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상업화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

다. 비정부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하는 방법 등으로 그들과 협의하고 소통하거나 자문을 구한다. 또는

라. 이 협정에 의하여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소통하고 협력한다.

4. 제3항가호에 언급된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하여,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산업 및 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기업 및 분야별 조사와 연구

나. 중개행사, 비즈니스 포럼 및 간담회

다. 혁신적인 분야에서의 무역 및 투자 진흥

라.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및 협력, 그리고

마. 전문가 교류, 훈련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5. 혁신위원회는

가. 무역위원회에 어떠한 사안도 회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무역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6. 혁신위원회는 기존 협력과의 중복을 회피하면서,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부속 기구가 자신에게 회부하고, 제11가.1조를 증진하기 위한 혁신과 무역의 상호작용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7. 혁신위원회는 제5항나호에 따라 권고할 때, 그 권고의 다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검토한다.

가. 이 협정상의 약속 전반에 걸친 시장접근

나. 양성 평등 및 여성의 혁신에 대한 참여

다. 중소기업이 혁신의 혜택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라.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촉진

마. 포용적 경제 성장 및 개발도상국의 혁신에 대한 참여, 그리고

바. 혁신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혜택

제11가.5조

혁신위원회에 대한 행정 규정

1. 혁신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고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2. 혁신위원회의 결정은 컨센서스로 이루어진다.

3. 혁신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동안 최소 연 1회,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대로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가상의 수단으로 개최될 수 있다. 혁신위원회는 회의 간 기간 동안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단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혁신위원회는 자신의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5. 혁신위원회는 작업계획을 결정한다.
6. 혁신위원회는 언제든지 무역위원회에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고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운영 개선 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7. 혁신위원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첫 회의 후 3년 이내에 이 장의 목적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자문 또는 권고와 함께 보고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8. 혁신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혁신위원회의 각 회의 후 논의의 요약본을 공개한다.

제11가.6조

혁신에 대한 국제 협력

양 당사국은 혁신위원회의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 포럼에서 혁신에 대하여 협력한다.

제11가.7조

접촉선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부터 30일 내에,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할 명시된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연락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연락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11가.8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